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주식회사 가우스자산운용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 1항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시행령, 법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 “관련 법규”라고 한다)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수수료의 종류)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업,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중개업 등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로부터 받는 금전(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매입보수, 매각보수, 특별용역보수 등 포함)

나. 판매회사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로부터 받는 금전

다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로부터 받는 금전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로부터 받는 금전

마. 집합투자재산평가보수: 채권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 자산을 시가평가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로부터 받는 금전

바. 성과보수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로부터 받는 금전(법 제 86조, 법시행령 제 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계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)

2. 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

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계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.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됨

다. 금융주선수수료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제5항 9호에 따른 『대출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업무』 관련 수수료로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해

결정하며, 대출의 중개·주선 관련 계약서에 수수료 금액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.

제4조(수수료 부과 기준)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 ①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회사는 신상품(집합투자기구,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을 포함한다)의 개발 및 기존상품의 연장 및 변경 등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운용계약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소집하여 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에서 수수료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,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

제6조(설명 의무) 회사는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투자광고) 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,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의 인상)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, 투자일임계약과 투자자문계약 등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.

1.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혹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수익자 또는 주주 전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총회 결의를 득한 것으로 인정한다.
2. 일임 및 자문계약의 경우는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제9조(공시 등) ①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게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